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장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등>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21호)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0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5

Ⅰ. 제안경위

1. 이개호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11. 29.

2. 이광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0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개호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임에도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국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는 도로에 접한 각종 공사현장, 대형 행사장, 집회 현장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직무상 위험 직군에 속하는 직종이 되었음.

또한 전국에는 전국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19만 명과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5만 명의 경비원들이 연예인 신변보호, 행사장 질서유지, 교통 유도 등 민간 경비 활동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용자인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을 위하여 1억 원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산업배상책임공제(보험)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공제(보험), 전기공사업 등 안전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손해배상 책임공제가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에는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배상을 게을리하거나 영세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 이광희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여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혼잡한 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줄이고자 도입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함.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경비업자들로 하여금 경비원이 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 행	이개호의원안	이광희의원안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들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경비대상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은 건설엔지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비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경우 경비업자는 보험료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유사 입법례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는 발주청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통해 경비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경비협회[2]가 「경비업법」 제23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업체는 2023년 기준 333개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연간 업체별 평균 납부액은 168만원(월평균 14만원)이고, 연평균 13.8건이 손해배상이 접수되었고, 보상사례는 4.6건, 평균배상액은 540만원임.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경비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경비업체 상당수가 영세한 실정[3]이며, 한국경비협회에서 운영 중인 공제사업 가입액(5억 6,097만원) 대비 보상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연평균 4.6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2) 2024년말 기준 전체 경비업자 4,214개사 중 1,350개사가 한국경비협회에 가입함.
3) 2024년 기준 경비업체 4,214개 중 2,709개(64%)가 10명 이하의 경비인력 배치 중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제26조제3항에서 제23조에 따른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공제사업(「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제1항[4]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제사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4)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공제사업) ①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는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